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6월 일 (제 356 회)

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제 안 자	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
제안연월일	2017년 6월 일

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17. 6. .
제안자 : 문장대온천개발저지
특별위원장

주문

-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

제안이유

- 문장대온천개발저지주조합 측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접수를 미루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
- 현재의 특위 활동기한(2017. 6. 30.)을 유지할 경우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,
-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
-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